

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에 관한 규정(3-5-13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37조 5항에 의거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생정원) 당해년도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3조(수업기한) 수업기한은 학기단위로 운영하며, 학기는 제1학기, 제2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고, 매 학기 전형을 거쳐 등록 후 수업을 받을 수 있다.

제2장 등 록

제4조(등록시기)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계절학기 등록은 전일제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5조(등록자격) 본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.

1. 고등학교 졸업자
2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제6조(지원절차) ① 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
3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 이미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③ 본 대학교에 계속 지원할 경우 전형료 및 제출 서류의 일부를 면제 또는 삭감할 수 있다.

제7조(전형시기) 지원자에 대한 전형시기(학기, 계절학기)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전형방법) ① 시간제 학생은 공개모집에 의해 학부(과)단위로 선발한다.

② 시간제 학생의 선발은 출신 고등학교의 성적 또는, 면접고사로 전형하되, 이를 병행 할 수 있다.

③ 계절학기의 전(前)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일제 취득기준학점의 1/2이하 범위 내에서 부족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별도 선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
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등록허가) ①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.

②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, 시간제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시간제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.

제10조(등록금) ①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으로 책정하되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3장 교과 및 수강신청

제11조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,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, 선발방법에 의거 전일제 학생과 통합하거나 또는 별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3. 1)

제12조(이수단위)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기타 이에 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수강신청절차) 수강신청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 학부(과)의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,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강학점신청기준) ①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09. 3. 1)

② 계절학기에는 전일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수강가능 학점의 1/2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③ (삭제 2009. 3. 1)

제15조(미수강신청이수)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수강신청 변경)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 표의 변경,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수강 신청 확인기간에 교무처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동일과목 중복수강금지) 동일과목을 중복수강 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)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 학부(과)에서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.

제4장 편입학·학위수여

제19조(전일제학생으로 신분변경) ① 시간제 학생이 전일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편입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시간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.

제20조(학위수여) ①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칙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졸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졸업요구 학점 중 1/2이상의 교과목(학점)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.

③ 학위종별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학위신청서를 해당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학 적

제21조(학적관리) 시간제학생의 학적은 별도로 기록·관리한다.

제22조(학년배정) 시간제학생에게는 특별히 학년을 배정하지 않는다.

제23조(학적변동) 시간제학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므로 휴학, 복학, 수료, 제적,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.

제6장 학생활동

제24조(학생활동금지) 시간제학생은 전일제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, 집단적인 행위, 성토, 시위, 농성, 등교거부,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25조(학칙준수의무) 이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장 제 증 명

제26조(제증명발급) 학생의 학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등록증, 성적증명서,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. 다만, 학생등록증을 도서관 열람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27조(제증명발급신청) 제 증명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28조(준수사항) ① 발급된 학생등록증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학기가 종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② 제 증명은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으며, 신분을 밝히는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29조(학칙준용) 이 규정에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「학칙」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